

제298회 정례회  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이병도의원 대표발의)

# 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병 도  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,  
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이병도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‘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그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, 아동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 또는 친인척 등 아동과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 밝혀지면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개인 가정에서 해결할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이에 본 개정안에서 보호자의 범위를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‘보호자’의 정의를 명시하고,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는

한편,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 
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  
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

또한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법률  
제17087호, 2020년 3월 24일 일부개정, 2020년 10  
월 1일 시행)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응급  
조치 등은 자치구에서 담당하고,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은  
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 
가 이원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.

아무쪼록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 
것을 부탁드립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 
바랍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